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117

발의연월일: 2020. 12. 4.

발 의 자 : 안규백・양경숙・오영환

이상민 · 김승원 · 고용진

박성준 · 신원식 · 서영교

김민철 • 이병훈 • 양정숙

이워택 · 이성만 의원

(14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공항에서는 승객의 안전과 항공보안을 위한 절차로 탑승객들의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탑승에 대한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다만, 현행법에는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보안을 위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지만, 신분 확인과 이에 필요한 신분증명서 제시 등의 절차는 국민의 권리제한과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임에도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승객의 신분증명서 소지와 제시 의무 등 본인 확인 과 관련한 사항을 법률에 신설하고, 승객이 위조 또는 변조한 신분증 명서를 제시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분증명서를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입법적 미비를 해결하고, 제재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5조의2 신설 등).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보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5조의2(승객의 신분증명서 확인 등) ①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은 주민등록증, 여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 ②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의 본인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명서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보여주어야 한다. 다만, 생체정보를 통해 본인임이 확인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2항에 따른 사항 외에 본인확인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 제23조제7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의2. 제15조의2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본인확인을 거부하는 사람 제50조제4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의2.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위조 또는 변조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분증명서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본인확인을 받으려 한 사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 <신 설></u>	제15조의2(승객의 신분증명서 확	
	인 등) ①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은 주민등록증, 여권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	
	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②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	
	업자가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	
	람의 본인 확인을 위하여 신분	
	증명서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보여주어야 한다. 다만,	
	생체정보를 통해 본인임이 확	
	인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사항 외에 본	
	인확인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① ~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①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항공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⑦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에 대하여 탑승을 거절할 수		
있다.	<u>.</u>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 2. ~ 4. (생략)
- ⑧・⑨ (생략)

제50조(벌칙) ① ~ ③ (생 략)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생략)

<신 설>

2. • 3. (생략)

⑤ ~ ⑧ (생 략)

1의2.	제15	조의2제2항	본문을
위반	하여	본인확인을	거부하
는 /	사람		

- 2. ~ 4. (현행과 같음)
- ⑧・⑨ (현행과 같음)

제50조(벌칙) ① ~ ③ (현행과 같음)

- 4 -----
- -----.
- 1. (현행과 같음)
- 1의2.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 여 위조 또는 변조한 신분증 명서를 제시하거나 다른 사 람의 신분증명서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본인확인을 받으려 한 사람
- 2. 3. (현행과 같음)
- ⑤ ~ ⑧ (현행과 같음)